

##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\*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(법인소재지)	(휴대)전화번호	
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원	
	④ 증여·상속 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	
	[ ] 부부 [ ] 직계존비속(관계: ) [ ] 그 밖의 관계( )	[ ] 보유 현금 [ ] 그 밖의 자산(종류: )	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	⑦ 소계 원	
① 자금 조달계획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	주택담보대출 원	
		신용대출 원	
		그 밖의 대출 원 (대출 종류: )	
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 ] 미보유 [ ] 보유 ( 건)		
	⑨ 임대보증금 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 원	
	⑪ 그 밖의 차입금 원	⑫ 소계 원	
	[ ] 부부 [ ] 직계존비속(관계: ) [ ] 그 밖의 관계( )	원	
⑬ 합계	원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 원		
	⑮ 계좌이체 금액 원	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 원	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원		
	지급 사유 ( )		
⑱ 입주 계획	[ ] 본인입주 [ 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	[ ] 임대 (전·월세)	[ 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·제7항·제9항·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### 유의사항

-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
-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

※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은 분양대금+발코니확장공사비+추가선택품목 금액의 합이 6억이상인 계약자만 해당합니다.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(양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 <b>당첨자 본인 성명 기재</b>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 <b>당첨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</b>	
	주소(법인소재지) <b>당첨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 기재</b>	(휴대)전화번호 <b>당첨자 본인의 연락처 기재</b>	
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으로 조달하는 금액(본인 명의의 예금(적금) 등) 원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당첨자 본인 명의의 주식, 채권, 이에 준하는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	
	④ 증여·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현금,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해지,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회수 등 이에 준하는 자금 기재 원	
	[ ] 부부 [ ] 직계존비속 (관계 : ) [ ] 그 밖의 관계 ( )	[ ] 보유 현금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현금 [ ] 그 밖의 자산 (종류 : 현금이 아닌 자산종류 기재 )	
	④번에 해당시 자금을 제공한 모든 자와의 관계 기재 (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 후 기재)		
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본인 소유 타 부동산 매도,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으로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	⑦ 소계 <b>②+③+④+⑤+⑥ 합계 금액</b> 원		
① 자금 조달계획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<b>우측 대출금액 합계</b>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합계 (주택담보대출+신용대출+그 밖의 대출금) 원	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 실행시 작성금지 원 신용대출 마이니스통장 등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 그 밖의 대출 금회 중도금 대출 및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(금회 중도금 집단 대출시 당첨된 동호수 분양가의 60%) (대출 종류 : 예) 중도금집단대출 ) 원	
	위의 주택 담보대출 금액 기재시에만 작성(중도금 대출 실행시 작성금지) 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 ] 미보유 [ ] 보유 ( 건) <small>예)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조달 하는 경우 보유에 체크 후 건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모두 기재(건수에 금회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한 그 외 분양권 및 입주권, 부부 공동명의 지분소유 포함하여 기재) 예) 무주택자의 경우 금회 취득하는 주택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고 후에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면 미보유에 체크</small>		
	⑨ 임대보증금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·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 사용 시 기재 원	
	⑪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 시 금액 기재 원	⑫ 소계 <b>⑧+⑨+⑩+⑪ 합계 금액</b> 원	
	[ ] 부부 [ ] 직계존비속 (관계 : ) [ ] 그 밖의 관계 ( )		
⑪번 해당시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 기재			
⑬ 합계	※ ⑦+⑫ [총금액] 당첨된 동·호수의 공급금액+발코니확장금액+추가 선택품목 금액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함 원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 (당첨된 동·호수의 공급금액+ 발코니확장금액+추가 선택품목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함) 원	
	⑮ 계좌이체 금액	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 (당첨된 동·호수의 공급금액+ 발코니확장금액+추가 선택품목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함) 원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작성 금지 원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작성 금지 원	
	지급사유 ( )		
⑱ 입주 계획	해당부분 체크 및 작성 [ ] 본인입주 [ 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 : 2025년 07월)	⑲번항목 기재시 필수 체크 [ ] 임대 (전·월세)	작성 금지 [ 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, 별표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날짜 작성금지

년 월 일

제출인

당첨자 본인 서명 기재

(서명 또는 인)

※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 3조에 의거 6억이상 주택 거래시 (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·입주권 전매를 포함)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관할 소재지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(6억이상 주택 기준 : 분양대금 + 발코니확장공사비 + 추가선택품목 금액 포함)

※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정확한 작성을 위해 연필로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.

	항목	상세항목	세부내용	
자 기 자 금	금융기관 예금액	예금(적금) 등	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	
	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(채권)매도액	주식·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	
		이에 준하는 자금	이에 준하는 자금	
	증여·상속 등	가족 등 증여·상속	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	
	현금 등 기타	보유 중인 현금	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	
		펀드/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	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	
		이에 준하는 자금	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	
	부동산 처분대금 등	타 부동산 매도액	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	
		기존 보증(전세)금	기존 보증(전세)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	
		중전부동산 권리가액	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	
이에 준하는 자금		부동산 등의 매각(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)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		
차 입 금 액	금융기관 대출액	주택담보대출	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(승계) 자금	
		신용대출	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	
		그 밖의대출	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	
		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	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√ 체크, 보유란에 √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(분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,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)	
	임대보증금	현 임차인 전세(보증)금 승계	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	
		신규 임대차 계약	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	
	회사지원금·사채	법인/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	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	
	그 밖의 차입금	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	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(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	
	입 주 계 획	본인입주	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
		본인 외 가족입주	본인 외 가족입주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(ex. 분가한 자녀가족,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)
임대(전월세)		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	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	
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	입주 또는 임대 이외	재건축/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	
입 주 계 획	계좌이체 금액	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	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	
	보증금·대출금 승계	기존 대출금·임대차 보증금 승계	매도인의 기존 대출금·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	
	현금 등 기타지급	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	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	